



# 두엄누리회보 제46호

2007년4월30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http://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 비료공정규격개정 고시

농촌진흥청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4월 5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공정규격 심의회를 열어 퇴비 수분규격 차등보증, 가축분 퇴비 신설 기계적 부속도 측정법 도입, 퇴비원료로 폐목분 사용금지 등 퇴비규격개정을 골자로 한 비료공정규격을 개정 고시하였다.

그 동안 퇴비공정규격개선에 대해 관련단체와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어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학계·연구기관·지자체 비료담당자·관련단체·퇴비업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퇴비규격개선안을 마련, 이번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이다.

퇴비수분규격은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50%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축분 투입비율이 높은 퇴비 등은 충분한 발효보다는 강제건조에 의존하거나 무기물을 첨가해 수분을無理하게 조절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일본의 사례(축분퇴비 70%등 원료에 따라 달리 규정)등을 고려하여 수분함량 한도를 55%로 하되 50%, 45%, 40% 등 5% 단위의 차등적인 자율보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하여 퇴비 생산업 등록증에 수분 50%이하로 등록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된 55%이하로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는 빠른 시

일 내에 비료등록변경신고를 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대로 수분함량을 보증하는 것이 되어 성분검사 결과 수분이 50%이상으로 검출되면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가축분이 50%이상 포함된 퇴비는 포장대에 "가축분퇴비(우분, 돈분, 계분 등)"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미숙퇴비로 인한 농작물피해 등 부작용을 줄이고자 퇴비의 부속도에 대한 기계적 측정법을 신설하여 기존의 "유기물 대질소비(C/N율)" 간접적 측정법과 병행, 최근 개발·보급되고 있는 여러 부속도 측정기를 활용하여 우선 자체검사용으로 적용토록 하고 추후 비료공정분석법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유해한 화합물이 처리된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등의 목분(톱밥)이 퇴비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 폐목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지정폐기물(폐놀수지 등)이 함유되어 있어 재활용을 할 수 없다.

퇴비 완제품은 원료 분석이 안 되기에 이러한 재활용금지 폐목분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어 얼마나 되는 양이 퇴비원료로 공급되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우선 유해화합물이 함유된 MDF등의 폐목분을 퇴비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비료등록권자인 시·도와 합동으로 퇴비원료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의해 조치하는 한편, 퇴비의 안정성 향상과 분류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위

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퇴비를 공급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개정고시는 2007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 농협중앙회 부산물,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운용기준 개정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부산물,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운용기준 6.지정해지 기준 3항에 비료공정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축산농가(원료구입처)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이 함유된 MDF등의 폐목분"이 함유된 가축분뇨 등을 원료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도 포함시키게 되었다.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어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회원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의뢰하여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환경농자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유기농업에의 사용가능성 등 관련정보를 공시하여 판매,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정신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매 분기 말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2.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3.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효과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

5.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금성경구·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

6.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7. 품목(농약·비료)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재에 한함)

8. 책임보험가입증서 사본(가입한 경우)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료는 원본 및 사본 각1부 제출

유해성분 분석 성적서는 비료관리법과는 달리 항생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사료관리법에 준하는 동물약품으로 사용되는 5종류의 잔유 항생물질 검사를 한 뒤 제출해야만 한다.

## 퇴비 정부지원사업 시 유의 사항

### 톤 백 공급 시 유의 사항

퇴비정부지원사업 시행시 20Kg 포장만 농협 검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규정이 일부 지역에서 퇴비살포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농가의 이용편의를 위해 톤 백 공급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우리 협회 공문 문서번호 07-101012<시행일 : 2007. 2. 5>). 이에 따라 톤 백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농협 지역본부에 사전 신고한 후 납품하도록 한바 있다. 지역본부에 신고 시 톤 백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가계약의 이유는 톤 백으로 공급 시 소포장에 비해 재료비·노무비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중앙회는 톤 백에 600Kg을 포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최저 6%까지 인하하여 금액결정을 다시 하도록 결

정하였다(국고 보조금은 이를 20Kg으로 환산하여 지급).

이로써 정부지원사업의 퇴비공급은 20Kg단위 포장과 톤 백 포장에 한해서만 납품이 가능해졌으며 벌크(산물) 형태의 공급은 여전히 불가하다. 톤 백 공급 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 비료 품질 관리와 관련 유의 사항

비료품질관리와 관련 비료단속은 연간 행정부서에서 상·하반기 2회, 농협중앙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모두 4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비료단속은 상반기에는 생산현장인 공장 안에서, 하반기에는 유통비료 중 지역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시료를 발체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중에도 생산현장에서 시료발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 조합을 추적하여 유통 비료를 단속하고 있다.

이는 품질관리업무에 비협조적인 일부 업체들로 인해 이루어진 조치로 보조비료 사업을 주관하는 농협중앙회는 어떠한 경우도 품질관리는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회원사 모두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 목분 톱밥 사용에 관한 방송 보도에 대하여

한미FTA 협정 타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특히 농업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듯 싶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개방정책을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은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익기능을 인정받아왔다. 그로 인해 시장경쟁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 왔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민은 여전히 힘들고 농촌은 낱이 폐폐해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농업 지원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노대통령 스스로도 “농업부분에 16조원을 투입했지만 22조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데 그쳤다고”말 하였다. 시장경제를 무시한 선심성 퍼주기식의 지원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인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상은 이루어져야 하나 궁극적인 농업의 활로는 정부의 보호가 아니라 철저히 시장에서 승부를 거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소득의 1위를 차지하는 쌀의 경우나 2위를 차지하는 축산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농업소득의 45%를 차지하는 쌀농사의 경우 정부의 쌀 수매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정부수매가에 의해 쌀값이 결정되니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수매가를 경쟁적으로 올려주었고 올린 금액으로 쌀을 수매하다 보니 수매자금 확보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농가소득보존은 전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게 되고 말았다.

그나마 쌀은 우리의 주곡이며 재배환경 또한 논은 물을 많이 담고 있어 우기에 홍수조절능력도 있고, 지하수를 보충하도록 물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환경적으로도 유익한 기능

이 있다.

하지만 축산의 경우는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축산분뇨처리는 문제가 커져만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육시설 지원 외에도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정부지원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 의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한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농·축협공동 퇴비장 확대는 운영상의 많은 허점을 드러내며 결국 이번 방송 보도와 같은 양평축협 사태를 낳게 하였던 것이다. 잘못된 정부지원은 결과적으로 불량제품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불공정사례로 이어져 내부 고발로 비화되어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민감한 시기에 외부로 잘못 알려져 우리 분야가 농업을 대표해 희생양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물론 금지된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장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불량자재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변명의 여지는 있다. 특히 보도내용 중 생산업체의 50~60%가 불량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한 업체의 말이 그대로 공중매체에 이용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

**방송보도 이후 서둘러 목분 톱밥의 사용은 중지되었으나 아직 톱밥의 수급조절에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내 모든 톱밥의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데 보도 내용대로 50~60%가 사용하였다면 갑자기 공급이 끊어져 수급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을 법도 하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용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또, 퇴비 생산업체 관리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시행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나 앞으로 시행 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축산농가가 축산 분뇨를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 신고만 하면 재활용 신고 없이도 퇴비를 생산·판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축산농가로부터 유통되는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대응 방법이 없고 그저 비료 공정규격에 맞는 품질관리만 철저히 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이 두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자재 관리는 오직 폐기물관리법에서 해야 할 텐데 재활용 금지 품목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활용자재로 흘러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랄 뿐이다.

4월 8일 이 방송이 보도되기 전인 3월 28일 대북 비료지원과 관련하여 MBC뉴스데스크 기자와 퇴비비료의 대북지원에 대해 화학비료와 병행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재요청이 있어 동행하였었다.

공교롭게도 한미FTA 타결로 방송이 하루 이를 미루어지다가 결국 4월 8일 뉴스데스크와 2580에 목분 톱밥 사용 퇴비의 문제점이 대대적으로 보도 될 예정으로 있어 대북 비료 지원에 대한 보도는 4월 6일 아침 뉴스시간으로 갑자기 변경 보도되었다. 일간 신문기사와 더불어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퇴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어렵사리 계획한 일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같은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방송매체를 통해 그 동안 서로 다른 입장에서 업계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했을 것을 생각하니 씁쓸한 기분을 넘어 허탈한 마음뿐이다.